

'94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

의안 번호	223
----------	-----

提出年月日: 1994. 3. 17.

提出者: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의회의 매각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불용)토지를 매수 신청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려는 것임.

※ 재산목록 별첨

구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회 계 명: 일반회계

(단위: m²,천원)

구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처 분	계	1	3	2,961				1	3	2,961	
	토지	1	3	2,961				1	3	2,961	
기 타											

19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6-4)

관리청명: 영등포구

회 계 명: 일반회계

(단위: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 각 사 유	매수희망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1	대지	영등포1동 620-111	33	3	2,961	상반기	도로개설 공사후 자투리 토지를 인접 대지 소유자에게 매각	영등포구 도림동 130-45 강순자	

연 번 : 1

(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

1. 재산의 표시 및 매각신청인

(단위㎡)

재 산 의 표 시			매각 대상 면적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영등포동 620-111	대지	33	33중3	영등포구 도림동 130-45	강 순 자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 (현 용 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도로개설 사업후 자투리땅으로 매수 신청인의 대지와 접함	일반주거 지역으로 12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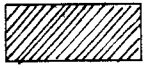
3. 매 각 사 유

- 상기 구유 재산을 매수신청인(강순자)의 대지와 접하고 있음
- 도로개설 사업후 자투리땅 (유휴대지)
- 매수 신청인이 건물 신축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5. 현황도

<p><u>법 레</u></p> <p>공유지 :</p> <p>점유부분 : (매각부분)</p>  <p>담장선 :</p> <hr style="width: 50px; margin-left: 0;"/>	
---	--